

입법예고 종법령명	신도단체 등록 및 관리령 개정안		
담 당	포교원 포교부 포교지원팀 (02-2011-1916)	입법예고일	2025년 2월10일 ~ 3월 1일

1. 이유 및 취지

-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과 사문화된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함(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개정)
- 가. 사문화된 조문 수정 및 삭제함(제3조, 제11조, 제13조)
- 라.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 별지 양식을 수정함(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3.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등록자격)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신도단체는 신도법 제30조의 개별 신도단체, 지역 단위 신도단체연합(기초 및 광역지역), 전국 단위 신도단체로 한다. 다만 포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보호육성을 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신도단체는 포교원에 등록할 수 있다.</p> <p>1. 의료인, 법조인, 교수·교사, 언론인, 공무원, 예술인,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의 신도단체</p> <p>2. 특정계층(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및 특수분야(장애인, 교육 등)의 신도단체</p>	<p>제2조(등록자격)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신도단체는 신도법 제30조의 개별 신도단체, 지역 단위 신도단체연합(기초 및 광역지역), 전국 단위 신도단체로 한다. 다만 포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보호육성을 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신도단체는 포교부에 등록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3조(등록신청) ① 신도단체를 종단에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도단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신도회를 경유하여 포교원에 제출한다.</p> <p>1. 신도단체 등록 신청서</p>	<p>제3조(등록신청) ① 신도단체를 종단에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도단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신도회를 경유하여 포교부에 제출한다.</p> <p>1. ~ 10.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2. 창립 목적 취지서 3.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규약) 4. 사업계획서 5. 지부 주소록 6. 회원명부 7. 임원 인적 사항 (대표자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포함, 신도증 사본) 8. 재산목록(토지, 건물) 9. 중지·중풍 이행 각서 10. 중앙신도회 회비 의무 이행 약속서</p> <p>② 포교원장은 제2조의 지역단위 신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교구본사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단에 등록된 신도단체가 비회원 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포교원을 운영하고 있는 때는 당해 포교원을 총무원 총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중앙신도회장은 ①항에 대해 의견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포교원장에게 제출한다</p>	<p>② 포교부장은 제2조의 지역단위 신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교구본사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항 삭제> ④ 중앙신도회장은 본조 제1항의 서류에 대해 의견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포교부에 제출한다.</p>
<p>제4조(등록접수 및 결정) ① 포교원장은 제3조의 신도단체 등록을 접수한 때는 15일 이내에 포교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포교원장은 신도단체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등록 신청 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는 때는 서류 보정을 명하거나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p>	<p>제4조(등록접수 및 결정) ① 포교부장은 제3조의 신도단체 등록을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② 포교부장은 신도단체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등록 신청 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는 때는 서류 보정을 명하거나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p>
<p>제5조 (등록중 교부 및 통지) ① 포교원장은 제4조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도단체의 대표자에게 그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포교원장은 포교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단 등록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신도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도단체 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도단체등록중'을 당해 신도단체의 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5조 (등록중 교부 및 통지) ① 포교부장은 제4조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도단체의 대표자에게 그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포교부장은 중단 등록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신도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도단체 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도단체 등록중'을 당해 신도단체의 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6조(등록취소사유) 포교원장은 중단에 등록된 신도단체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신도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p>	<p>제6조(등록취소사유) 포교부장은 중단에 등록된 신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 신도단체의 등록을 취</p>

현행	개정안
<p>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 설립 목적에 반하는 운영을 한 때 2. 단체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한 때 3. 중헌 및 중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4. 중단의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을 한 때 5. 사회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때 6. 중단의 의무 이행을 상습적으로 하지 아니 한 때 7. 신도단체가 설립한 포교원이 본종의 중지중풍 또는 중단의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을 한 때 	<p>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7조(등록중의 재교부) 신도단체의 대표자는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으로 인하여 식별이 불가능한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도단체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첨부하여 포교원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제7조(등록중의 재교부) 신도단체의 대표자는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으로 인하여 식별이 불가능한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도단체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첨부하여 포교부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제8조(해산신고) 신도단체의 대표자는 신도단체가 해산된 때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도단체해산신고서'에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교원에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증 2. 해산을 의결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p>제8조(해산신고) 신도단체의 대표자는 신도단체가 해산된 때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도단체해산신고서'에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교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0조(보고의무) ① 중단에 등록된 신도단체의 대표자는 중앙신도회를 경유하여 포교원에 단체의 활동 및 운영 상황을 분기별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중단에 등록된 신도단체의 대표자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때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도단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신도회를 경유하여 포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또는 회칙(규약)의 변경 2. 명칭의 변경 3. 사업의 변경 4. 임원의 변경 5. 주소의 변경 6. 비회원 신도 대상의 포교원 개원 <p>③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때는 그 결정을</p>	<p>제10조(보고의무) ① 중단에 등록된 신도단체의 대표자는 중앙신도회를 경유하여 포교부에 단체의 활동 및 운영 상황을 분기별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중단에 등록된 신도단체의 대표자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때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도단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신도회를 경유하여 포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의결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포교원장은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중단 등록 당시의 단체의 설립 목적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때는 당해 신도단체의 등록을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교원장은 당해 신도단체의 대표자에게 재심사 결과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포교부장은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중단 등록 당시의 단체의 설립 목적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때는 당해 신도단체의 등록을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교부장은 당해 신도단체의 대표자에게 재심사 결과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1조(포교원 등록) ① 중단등록 신도단체가 포교원을 개원하고자 하는 때는 총무원 총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포교원장은 포교원을 개원하고도 중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신도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11조 <조 삭제></p>
<p>제12조(예산 및 결산등) 중단에 등록된 신도단체의 대표자는 포교원장에게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고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예산 및 결산등) 중단에 등록된 신도단체의 대표자는 포교부장에게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고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감독) 포교원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는 신도단체의 대표자에게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총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신도단체가 운영하는 포교원에 관한 관리·감독은 총무원 총무부에서 관장한다.</p>	<p>제13조(감독) 포교부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는 신도단체의 대표자에게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총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4조(행정처분) 포교원장은 중단에 등록된 신도단체에 대하여 제6조 각호에 규정한 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단 사업 참여 금지 2. 지원 중단 3. 시정 요구 	<p>제14조(행정처분) 포교부장은 중단에 등록된 신도단체에 대하여 제6조 각호에 규정한 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 (현행과 같음)
<p>제15조(임원의 징계) ① 포교원장은 중단에 등록된 신도단체의 임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 청탁과 비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이권에 개입하였을 때는 해당자의 비위를 조사하여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p> <p>② 포교원장은 중단에 등록된 단체의 임원이 중범 및 중령의 제규정을 현격히 위반하였을 때는 당해</p>	<p>제15조(임원의 징계) ① 포교부장은 중단에 등록된 신도단체의 임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 청탁과 비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이권에 개입하였을 때는 해당자의 비위를 조사하여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p> <p>② 포교부장은 중단에 등록된 단체의 임원이 중범 및 중령의 제규정을 현격히 위반하였을 때는 당해</p>

현행	개정안
임원을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임원을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제17조 (업무소관) 종단에 등록된 신도단체에 관한 업무 소관은 포교원 포교부로 한다.	제17조 (업무소관) 종단에 등록된 신도단체에 관한 업무 소관은 포교부로 한다.
제18조(내규)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포교원 내규로 정한다.	제18조(운영규칙)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불기2569(2025).00.0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